

그린보너스정기예금 특약

제1조 【적용범위】

그린보너스정기예금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, 거치식 예금 약관과 조세특례제한법,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조 【예금종류】

이 예금은 거치식 정기예금이다.

제3조 【가입대상】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.

제4조 【가입기간】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제5조 【가입금액】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이상 3,000만 원 이하로 계좌 수에 상관없이 1인 총 가입한도는 3,000만원이다.

제6조 【기본이율】

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현재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체국에 고시한 챔피언정기예금의 기간별 기본이율을 적용한다.

제7조 【우대이율】

- ① 각 항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한다.
- ② 우체국장전결(우대)금리 : 신규가입일 현재 기간별, 금액별 우대금리 적용
- ③ 그린금리 :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 충족 시 각 연 0.1%p씩 최고 연 0.2%p 적용
 1. 전자통장(별도의 종이 통장을 발급하지 않고 IC칩이 내장된 ONE-Plus 카드에 다수 계좌 정보를 저장하는 통장) 이용고객
 2. 자전거 및 대중교통 등 녹색운동 동참 고객

④ 보너스금리 :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 충족 시 각 연 0.1%p씩 최고 연 0.3%p 적용

1. 에너지절약 프로그램(탄소포인트제, 에코마일리지, 탄소마일리지 등) 이용 고객
2. 경차 또는 승용차 요일제 이용 고객
3. 친환경 또는 저공해 자동차 이용 고객
4. 녹색인증 건축물 소유 또는 입주 고객

⑤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 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.

⑥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의해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체국에 게시한다.

제8조 【이자지급방식】

- ① 이자지급방식은 만기 시 일시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.
- ② 만기일이 휴일(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)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등록된 가입자 명의의 우체국 요구불계좌로 자동지급하며 휴일기간에 대한 이자는 모든 우대이율을 포함하여 지급한다.

제9조 【이자계산】

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(예치일수/365)을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,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.

제10조 【중도해지】

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

제11조 【만기 후 해지】

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.

제12조 【자동 만기해지】

- ① 만기시 수령금은 우체국 요구불예금으로 자동 지급하며 가입 시에 가입자 명의의 요구불예금 계좌를 지정한다.
- ② 만기일 전에 본인이 우체국에 방문하여 만기금을 수령할 요구불예금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13조 【기 타】

- ① 이 예금은 전자통장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, 종이통장을 원하는 고객은 거치식예금 통장을 사용한다. 가입 후 전자통장에서 종이통장으로 또는 종이통장에서 전자통장으로 전환이 불가하다.
- ② 이 예금은 일반과세, 세금우대, 생계형저축 가입이 가능하다.
- ③ 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.
- ④ 우수고객우대금리 및 본부장우대금리 지급이 불가하다.
- ⑤ 이 예금은 예금 잔액의 95%범위 내에서 정해진 한도액까지 예금담보대출 약정이 가능하다.

부 칙

- ① 이 특약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< 신규대조문 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2조(예금의 성격) 이 예금은 <u>거치식 예금</u> 이다.	제2조(예금종류) ----- <u>거치식 정기예금</u> -----,	용어정리
제8조(이자지급방식) ② 만기일이 휴일(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)인 경우 <u>익영업일에</u> 등록된 가입자 명의의 우체국 요구불계좌로 자동지급하며 휴일기간에 대한 이자는 모든 우대이율을 포함하여 지급한다.	제8조(이자지급방식) ② ----- ----- <u>다음</u> <u>영업일에</u> ----- ----- -----,	
제9조 (이자계산)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<u>예치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단리 계산하되</u> ,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.	제9조 (이자계산) ----- <u>예치기간(예치일수/365)을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</u> , ----- ----- -----,	상품정비 반영
	부 칙 ① 이 특약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	